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서민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,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종료 기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(안 제2조)
-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(안 제4조)
-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(안 제5조)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(안 제7조)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자동이체감면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함(안 제10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, 「지방세법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식품산업진흥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, “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” 등 4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일몰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